

2017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2017. 8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대한전문건설협회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2017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67.8로서, 동 기간의 경제상황과 건설투자 등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일부 공종에 편중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증가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7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2.1로 이번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이는 2분기에 공사수주증가 등이 가시화되지 못함에 그간 건설업체 등이 우려해온 하반기의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종전과 달리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4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34%)', '입·낙찰제도의 개선(11%)', '민간투자 활성화(10%)'와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4.5%)'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6.7%)'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력난과 인건비'가 여전히 다수응답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자금사정지수]**는 2분기 연속으로 높아졌으나 다음 분기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45%)'과 '금융기관 차입(40%)'의 비중이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1분기의 96%보다는 낮아진 것임.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회사채 발행(2%)'과 '사채시장 조달(3%)'이라고 답한 업체들이 나타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하도급도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5일, 하도급공사 46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76%)'과 '현금+어음(18%)'의 비율이 대부분이었음. 이번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0%)'의 응답은 없었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다시 종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7%가 '60일 이내'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 하도급공사에서는 평균만기일이 '30일 이하'라는 응답비율이 극히 낮았음.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종전과 달리 '시중은행 할인(38%)'과 '만기일까지 보유(38%)'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1/4분기와 유사했으며 **[인건비지수]**는 상승했으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재·장비수급지수]**는 기존 조사와 다른없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자재비지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2016년 1분기부터의 하락추세를 지속함.
- **[이중계약서 작성]**은 7%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11%, **[하도급계약시 부당금액 피해]**는 13%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2%,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1~2회였으며,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없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소폭 증가한 47%,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 강요받은 경우는 4%,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일반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3%로 집계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38%)’와 ‘하도급계약 체결시(26%)’가 일반적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1~30위 업체’를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았음. **[미교부 사유]**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27%)’과 ‘원사업자의 교부거부(21%)’가 주를 이룸.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23%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18%가 교부받았다고 답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방법으로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49%)’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지난 1/4분기와 동일한 88%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24%가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는 종전과 달리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8%로 집계됨.
-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38>에 정리됨.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를 활용함.
- 원·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2. 조사내용

- 2017년도 2/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289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체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6개사(33.2%), 지방권 업체는 193개사(66.8%)로 구성되며, 기업규모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 중 62개사(유효회수율: 21.5%)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에 활용됨.

〈표-1〉 설문조사 내용

| 구 분 | 조 사 내 용 |
|----------------|--|
| 건설경기(전문건설업) 전망 | ①경기전망 ②경기활성화 대책 |
|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③기업경영 애로사항 ④자금사정 전망 ⑤자금조달 방법 |
| 공사수주 | ⑥공사수주 전망 |
| 공사대금 수령 | ⑦대금수령 소요일 ⑧수령형태 ⑨수금전망 ⑩수령어음 평균만기일 ⑪어음의 현금화 방법/할인율 |
| 하도급 불공정거래 | ⑫이중계약서 작성경험 ⑬불공정 특약조항 유무 ⑭부당감액 피해사례 ⑮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무 ⑯전자 입찰시 재입찰 ⑰하자담보책임기간 ⑱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⑲지급보증서 미수령 사유 ⑳계약 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 지정 ㉑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초과강요 ㉒하자보수보증을 초과강요 ㉓무리한 하자보수요구 ㉔공상처리/비용 |
| 기술·기능인력 수급 | ⑮기술·기능인력 수급전망 ⑮인건비 전망 |
| 자재·장비 수급 | ⑮자재·장비 수급전망 ⑮자재가격 전망 ⑮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 ⑮발주자/원도급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⑮시공단계 ⑮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⑮유지관리단계 ⑮자재·장비업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기타 건설공사 수행 관련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⑮지급보증서 교부시점 ⑮원사업자 규모 ⑮미교부사유 ⑮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교부 ⑮어음만기일에 따른 지급보증서, ⑮지급보증서 교부율 상향 |
| 계약이행보증 | ⑮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교부시점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사유 ⑮현장설명서 특기조건의 전액보상 규정 |
| 건설기계보증 | ⑮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⑮지급보증서 미발급사유 ⑮계약이행보증서 수령 ⑮계약이행보증서 미수령사유 ⑮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점 |

I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분석

1. 2017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7년 3/4분기 전망

- [2017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67.8(70.0점→67.8점)로 조사됨²⁾. 동 기간의 경제상황이나 건설 투자 등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일부 공종에 편중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
 - 실제로 2분기의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의 분양물량 호조 등이 뒷받침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금년 초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던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금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최대 3%의 성장률도 예상할 정도임.
 -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2분기의 경기개선이 건설투자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을 지적하며 다음 3분기 이후의 건설투자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2분기 들어 건축허가와 건설수주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건설투자의 연착륙이 요구되는 상황임.
 - 2분기의 전문건설공사 수주(추정액)는 4월과 5월에 연이은 감소를 보였으며 6월에 들어서야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섬.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선행공종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과 토공사업의 수주액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반면 후행공종인 실내 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의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2〉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및 전망

|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7년 | 2017년 | 2017년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 경기실적(BSI) | 67.1 | 70.1 | 56.3 | 61.6 | 70.0 | 67.8 | 62.1(전망) |

2) 참고로 2분기에 해당하는 5월과 6월의 월별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각각 66.7과 64.7로 나타남.

- 이를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2분기에 들어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감소와 수주공종의 편종을 겪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추후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수주와 건설경기에 지속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17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2.12로 이번 2/4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표-2>. 이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2분기에 별다른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증가가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그간 건설업계 등이 우려해온 금년 하반기부터의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으나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수주건수는 전년 보다 증가한 반면 전체 수주액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주로 도로 등 토목 부문의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임.
 - SOC관련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대부분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부의 추경안에서 SCO예산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하반기의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주요 종합건설사들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내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더구나 이들에게 여전히 구조조정 등의 내실다지기가 현재진행형임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금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분양시장의 강세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전문건설공사의 발주도 일부 등락은 있겠지만 단시일에 전문건설업 자체가 급격한 시장침체나 악화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수주산업인 건설업에서도 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특성상 업황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종전과 달리 ‘SOC 등 공공 발주의 확대(4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34%)’, ‘입·낙찰제도의 개선(11%)’, ‘민간투자 활성화(10%)’와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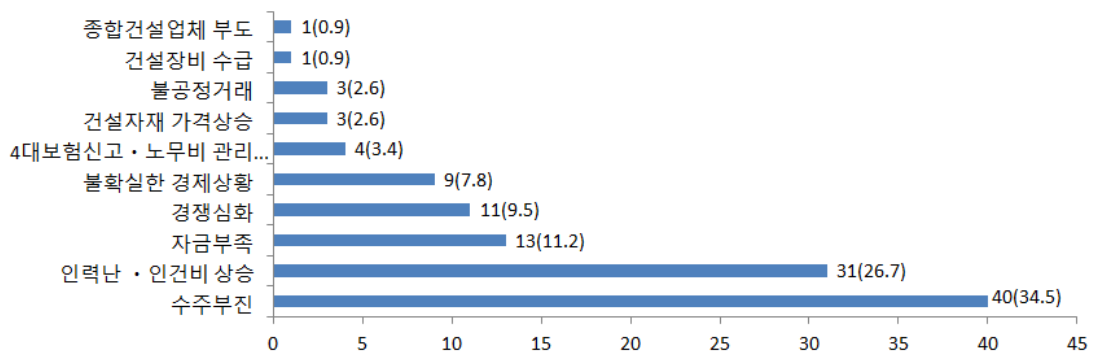
〈표-3〉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공공발주 확대 | 21 (27) | 18 (28) | 23 (27) | 19 (27) | 25 (41) |
| 민간투자 활성화 | 6 (8) | 9 (14) | 10 (12) | 5 (7) | 6 (10) |
| 부동산 규제 완화 | 0 (0) | 0 (0) | 2 (2) | 1 (1) | 1 (2) |
| 입·낙찰제도 개선 | 13 (16) | 9 (14) | 5 (6) | 11 (16) | 7 (11) |
| 지역경제 활성화 | 37 (47) | 28 (44) | 44 (51) | 34 (49) | 21 (34) |
| 기 타 | 2 (3) | 0 (0) | 2 (2) | 0 (0) | 1 (2) |

2.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4.5%)’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6.7%)’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력난과 인건비’가 여전히 다수응답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1].
-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11.2), 경쟁심화(9.5%), 불확실한 경제상황(7.8%), 4대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4%), 건설자재 가격상승(2.6%), 불공정거래(2.6%), 건설장비수급(0.9%), 종합건설업체의 부도(0.9%)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금년처럼 가뭄이 이어질 경우 식재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가 지난 4년 정도 반복됨에 따라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업에서는 통상적인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기후여건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임.

(단위 : 응답수, %)



[그림-1]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7년 1/4분기)

- **[자금사정(자금조달)지수]**는 71.7(67.1→71.7점)로 지난 1/4분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다음 3/4분기에는 67.8로 이번 분기보다 다소 하락해 지난 1/4분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4>.
- 금년 상반기에 자금조달지수가 꾸준히 상승한 것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의 호황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동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회사규모 등이 건전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주요 회원사들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4> 전문건설업 자금조달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2016년 4/4분기 | 2017년 1/4분기 | 2017년 2/4분기 | 2017년 3/4분기 |
|------|----------------|----------------|----------------|----------------|----------------|----------------|-----------------|
| 자금조달 | 57.9 | 74.0 | 54.7 | 57.0 | 67.1 | 71.7 | 67.8(전망) |

-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45%)’과 ‘금융기관 차입(40%)’의 비중이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1분기의 96%보다는 낮아진 것임. 그 밖으로는 ‘보유자산 매각(3%)’이라는 응답은 여전히 소수 응답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회사채 발행(2%)’과 ‘사채시장 조달(3%)’이라고 답한 업체들이 나타남. ‘상생협력펀드 활용(0%)’에 대한 응답은 없었음. <표-5>.

<표-5>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법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금융기관 차입 | 34 (43) | 20 (31) | 26 (31) | 25 (38) | 24 (40) |
| 사채시장 조달 | 1 (1) | 1 (2) | 1 (1) | 0 (0) | 2 (3) |
| 회사채 발행 | 2 (3) | 1 (2) | 1 (1) | 0 (0) | 1 (2) |
| 상생협력펀드 활용 | 0 (0) | 0 (0) | 0 (0) | 0 (0) | 0 (0) |
| 대표자 개인 자금 | 39 (49) | 37 (58) | 53 (62) | 38 (58) | 27 (45) |
| 보유자산 매각 | 1 (1) | 2 (3) | 2 (2) | 1 (2) | 2 (3) |
| 기타 | 2 (3) | 3 (5) | 2 (2) | 2 (3) | 4 (7) |

3. 공사수주와 공사대금 수금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73.8(66.7점→73.8점)로 1/4분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하도급은 55.6(50.8점→55.6점)도 1/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6>.
 - 전문건설공사의 원도급발주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SOC관련 공공기관들의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이 기존 목표치를 넘겼다는 점에서 지난 1분기에 이은 원도급 공사수주지수의 상승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의 상승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크게 늘어난 건설공사의 수주물량이 하도급공사로 이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최근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감공사 등 건설공사의 후행공종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3/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이번 2/4분기보다 하락, 하도급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주로 공공물량의 상반기 조기발주 등에 따른 하반기 수주절벽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음.
 - 하도급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은 물론 건설업의 연관산업인 건설자재업계 등에서도 주택시장의 상황이 금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세부공종이 아닌 전문건설업 전체의 하도급 공사물량은 일정수준 확보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문건설업체들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표-6>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2016년 4/4분기 | 2017년 1/4분기 | 2017년 2/4분기 | 2017년 3/4분기 |
|-----|----------------|----------------|----------------|----------------|----------------|----------------|-----------------|
| 원도급 | 42.1 | 68.8 | 45.3 | 55.8 | 66.7 | 73.8 | 57.6(전망) |
| 하도급 | 59.2 | 54.5 | 51.6 | 58.1 | 50.8 | 55.6 | 55.6(전망) |

-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가 25일, 하도급공사가 46일로 하도급공사의 대금수령일수가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남 <표-7>. **[공사대금의 수령 형태]**는 '전액 현금(76%)'과 '현금+어음(18%)'의 비율이 전체의 94%를 차지함. '전액 어음(0%)'과 '어음대체결제수단(0%)'의 응답은 없었음 <표-8>.

<표-7>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 (일)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원도급 공사 | 24 | 23 | 24 | 24 | 26 | 25 |
| 하도급 공사 | 43 | 40 | 44 | 39 | 45 | 46 |

<표-8>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전액 현금 | 51 (78) | 52 (88) | 54 (73) | 45 (80) | 37 (76) |
| 전액 어음 | 3 (5) | 1 (2) | 1 (1) | 1 (2) | 0 (0) |
| 현금 + 어음 | 9 (14) | 4 (7) | 13 (18) | 8 (14) | 9 (18) |
| 어음대체결제수단 | 1 (2) | 2 (3) | 4 (5) | 0 (0) | 0 (0) |
| 기타 | 1 (2) | 0 (0) | 2 (3) | 2 (4) | 3 (6) |

- **[공사대금수급]**은 지난 1/4분기보다 상승한 91.4(82.1점→91.4점)로 조사되었으나 다음 3/4분기에는 83.3으로 다시 종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표-9>.
-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전문건설업계의 현황개선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이같은 수준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9>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급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2016년 4/4분기 | 2017년 1/4분기 | 2017년 2/4분기 | 2017년 3/4분기 |
|----------|-------------|-------------|-------------|-------------|-------------|-------------|-----------------|
| 원·하도급 전체 | 81.6 | 80.5 | 78.1 | 80.2 | 82.1 | 91.4 | 83.3(전망) |

-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은 '30일 이하(45%)'와 '31~60일(32%)'이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61~90일(19%)'의 응답도 종전 수준을 유지함. 반면 하도급공사에서는 평균만기일이 '30일 이하(10%)'라는 응답비율이 극히 낮았으며 '31~60일(45%)'이 가장 많았음. 또한 '91~120일(16%)'의 장기어음을 수령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음 <표-10, 표-11>.

<표-10> 원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30일 이하 | 17 (46) | 12 (44) | 20 (50) | 17 (59) | 14 (45) |
| 31~60일 | 10 (27) | 10 (37) | 12 (30) | 8 (28) | 10 (32) |
| 61~90일 | 8 (22) | 4 (15) | 7 (18) | 4 (14) | 6 (19) |
| 91~120일 | 1 (3) | 1 (4) | 0 (0) | 0 (0) | 1 (3) |
| 120일 초과 | 1 (3) | 0 (0) | 1 (3) | 0 (0) | 0 (0) |

<표-11> 하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30일 이하 | 6 (16) | 5 (19) | 8 (20) | 5 (17) | 3 (10) |
| 31~60일 | 21 (57) | 15 (56) | 20 (49) | 17 (59) | 14 (45) |
| 61~90일 | 9 (24) | 6 (22) | 12 (29) | 4 (14) | 9 (29) |
| 91~120일 | 1 (3) | 1 (4) | 1 (2) | 3 (10) | 5 (16) |
| 120일 초과 | 0 (0) | 0 (0) | 0 (0) | 0 (0) | 0 (0) |

-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시중은행 할인(38%)’과 ‘만기일까지 보유(38%)’ 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다수응답이었음. 그밖에는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12%)’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은 없었음 <표-12>.

〈표-12〉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시중은행 할인 | 8 (24) | 4 (20) | 8 (29) | 10 (45) | 9 (38) |
| 제2금융권 할인 | 0 (0) | 0 (0) | 0 (0) | 0 (0) | 0 (0) |
| 사채시장 할인 | 1 (3) | 1 (5) | 0 (0) | 0 (0) | 0 (0) |
|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 | 3 (9) | 0 (0) | 6 (21) | 3 (14) | 3 (12) |
| 만기일까지 보유 | 18 (53) | 11 (55) | 10 (36) | 3 (14) | 9 (38) |
| 기타 | 4 (12) | 4 (20) | 4 (14) | 6 (27) | 3 (12) |

4. 기술·기능인력 및 자재·장비 관련

- [기술·기능인력 수급과 인건비지수]는 인력수급지수는 60.0(60.6점→60.0점)으로 지난 1/4분기와 유사했으며 인건비지수는 35.0(29.4점→35.0점)으로 상승함³⁾ <표-13>.
 - 2분기의 건설업 취업자수는 역대 최대의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의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늘어난 건설현장들이 점차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면적인 인력수요는 수그러든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마감공사 등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특정 공종에서는 일시적인 인력수급난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수급과 높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 상황임. 이는 공사수요가 몰리는 등의 지역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3) 인력수급지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13〉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7년 | 2017년 | 2017년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 인력수급 | 81.6 | 84.4 | 70.3 | 67.4 | 60.6 | 60.0 | 56.9(전망) |
| 인건비 | 55.3 | 46.8 | 45.3 | 43.0 | 29.4 | 35.0 | 37.5(전망) |

- [자재·장비수급과 자재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2/4분기의 자재수급지수⁴⁾⁵⁾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6.7(89.2점→96.7점)으로 나타남. 자재비지수도 43.3(33.3점→43.3점)로 2016년 1/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추세를 여전히 이어감 <표-14>.
- 작년의 경우에는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등 착공현장의 자재수요에 따른 수급문제가 부각되었던 반면 금년 들어서는 골조용 레미콘이나 내장재 등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물론 시멘트와 골재 등의 기초자재의 가격도 상승세에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공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님.
- 오히려 자재와 관련된 사안은 2분기보다는 다음 3분기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금년 여름의 장마와 폭염 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현장들이 공기지연을 상쇄하기 위해 가을에 접어들면서 인력과 자재 등을 집중투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표-14〉 전문건설업 자재·장비 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6년 | 2017년 | 2017년 | 2017년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 자재·장비수급 | 98.7 | 98.7 | 101.6 | 93.0 | 89.2 | 96.7 | 94.9(전망) |
| 자재비 | 64.5 | 55.8 | 53.1 | 51.2 | 33.3 | 43.3 | 36.2(전망) |

4)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대부분 이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다시 100을 넘어섬

5)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

5. 하도급 불공정거래

- [이중계약서 작성경험]은 응답업체의 7%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표-15>,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11%가 <표-16>, [하도급 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3%의 업체가 겪은 것으로 나타남 <표-17>.

〈표-15〉 이중계약서 작성경험 유무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경험있음 | 7 (10) | 3 (4) | 6 (11) | 10 (12) | 4 (6) | 4 (7) |
| 경험없음 | 65 (90) | 74 (96) | 50 (89) | 71 (88) | 60 (94) | 51 (93) |

〈표-16〉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유무⁶⁾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경험있음 | 6 (8) | 3 (4) | 5 (9) | 6 (8) | 5 (8) | 5 (11) |
| 경험없음 | 65 (92) | 73 (96) | 50 (91) | 73 (92) | 58 (92) | 47 (89) |

〈표-1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경험있음 | 8 (12) | 8 (11) | 6 (11) | 11 (14) | 9 (14) | 7 (13) |
| 경험없음 | 61 (88) | 68 (89) | 48 (89) | 69 (86) | 55 (86) | 47 (87) |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⁷⁾]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82%, '미사용'은 9%, '수정·변경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은 7%로 집계됨.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표-18>.

6) 본 조사문항은 2014년 3분기부터 추가된 것임

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6.12.30. 개정)

〈표-1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사용 | 65 (88) | 50 (88) | 60 (75) | 50 (77) | 47 (82) |
| 미사용 | 3 (4) | 2 (4) | 6 (8) | 6 (9) | 5 (9) |
| 수정·변경사용 | 6 (8) | 5 (9) | 13 (16) | 7 (11) | 4 (7) |
| 기타 | 0 (0) | 0 (0) | 1 (1) | 2 (3) | 1 (2) |

-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의 응답비율은 1회가 48%, 2회가 23%로서 이들의 합계가 71%로 나타남.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10%였으며 4회 이상을 답한 업체는 없었음 〈표-19〉.

〈표-19〉 전자입찰 재입찰 경험횟수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1회 | 12 (48) | 13 (39) | 6 (29) | 10 (26) | 13 (38) | 15 (48) |
| 2회 | 6 (24) | 7 (21) | 5 (24) | 16 (41) | 12 (35) | 7 (23) |
| 3회 | 0 (0) | 1 (3) | 0 (0) | 4 (10) | 1 (3) | 3 (10) |
| 4회 이상 | 2 (8) | 3 (9) | 3 (14) | 2 (5) | 3 (9) | 0 (0) |
| 기타 | 5 (20) | 9 (27) | 7 (33) | 7 (18) | 5 (15) | 6 (19) |

- [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이 31%, '법정기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67%로 지난 1분기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20〉.

〈표-2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법정기간보다 길다 | 11 (15) | 11 (20) | 24 (33) | 18 (30) | 16 (31) |
| 법정기간과 동일 | 61 (84) | 41 (76) | 45 (63) | 41 (67) | 34 (67) |
| 기타 | 1 (1) | 2 (4) | 3 (4) | 2 (3) | 1 (2)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비율은 지난 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47% 〈표-21〉,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직불현장(52%)'였으며 '이유를 알 수 없다(38%)'는 응답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함⁸⁾ 〈표-22〉.

8) 일부업체는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계약하지 않는다면 공사계약을 하지 않기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수령한다는 업체도 있었으나 이런 사례는 드문 경우임.

〈표-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여부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24 (38) | 40 (54) | 23 (43) | 34 (46) | 29 (49) | 23 (47) |
| 없다 | 39 (62) | 34 (48) | 31 (57) | 40 (54) | 30 (51) | 26 (53) |

〈표-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 사유 (건, %)

| | '16. 3분기 | '16. 4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 | 4 (10) | 3 (7) | 3 (7) | 3 (8) | 2 (7) |
| 하도급대금 직불현장 | 20 (51) | 20 (47) | 20 (47) | 19 (51) | 15 (52) |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 1 (3) | 4 (9) | 4 (9) | 5 (14) | 1 (3) |
| 이유모름 | 14 (36) | 16 (37) | 16 (37) | 10 (27) | 11 (38) |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특정업체(서울보증보험)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4% 〈표-23〉,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지난 분기보다 줄어든 13%(원도급업체가 요구하는 보증율은 주로 10~20%) 〈표-24〉,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율 5%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2%였음 〈표-25〉.

〈표-23〉 서울보증보험 강요 유무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9 (14) | 2 (3) | 1 (2) | 3 (4) | 2 (3) | 2 (4) |
| 없다 | 57 (86) | 72 (97) | 53 (98) | 71 (96) | 59 (97) | 48 (96) |

〈표-24〉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3 (5) | 8 (11) | 3 (6) | 8 (10) | 11 (18) | 7 (13) |
| 없다 | 62 (95) | 65 (89) | 51 (94) | 69 (90) | 50 (82) | 45 (87) |

〈표-25〉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5 (7) | 5 (7) | 2 (4) | 5 (6) | 4 (6) | 1 (2) |
| 없다 | 62 (93) | 68 (93) | 52 (96) | 73 (94) | 58 (94) | 51 (98) |

-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는 통상적인 수준인 23%로 집계되었으며 <표-26>, **[산업재해발생시 공상처리 경험]**은 9%로 나타남 <표-27>.

<표-26>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16 (25) | 17 (24) | 8 (15) | 17 (22) | 15 (25) | 12 (23) |
| 없다 | 49 (75) | 55 (76) | 45 (85) | 61 (78) | 46 (75) | 40 (77) |

<표-27>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경험 (건, %)

| | '16. 1분기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다 | 4 (6) | 3 (4) | 4 (8) | 4 (5) | 6 (10) | 5 (9) |
| 없다 | 66 (94) | 66 (96) | 49 (92) | 71 (95) | 53 (90) | 49 (91)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하도급계약 체결시(26%)'였음. 3개월 이내(1%)'라는 응답도 일부 나타남 <표-28>.

<표-28>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시점 (건, %)

|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하도급계약 체결시 | 11 (31) | 11 (33) | 9 (26)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21 (60) | 14 (42) | 13 (38)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3) | 3 (9) | 1 (3)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초과 | 1 (3) | 0 (0) | 0 (0) |
| 기 타 | 1 (3) | 5 (5) | 11 (32)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 능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1~30위 업체'가 25%, '31~100위 업체'가 16%, '101~200위 업체'가 22%로 집계됨 <표-29>.

〈표-29〉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 (건, %)

|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시평 1~30위 업체 | 4 (24) | 6 (22) | 4 (16) | 8 (25) |
| 시평 31~100위 업체 | 3 (18) | 9 (33) | 5 (20) | 5 (16) |
| 시평 101~200위 업체 | 3 (18) | 6 (22) | 9 (36) | 7 (22) |
| 기 타 | 7 (41) | 6 (22) | 7 (28) | 2 (38) |

- [교부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27%)’과 ‘원사업자의 교부거부(21%)’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12%)’과 ‘원사업자와 합의(12%)’의 응답비율은 동일했으며,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이행보증 미제출(0%)’이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가 된 사례는 없었음 〈표-30〉.

〈표-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인데도 교부받지 못한 이유 (건, %)

|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원사업자의 교부거부 | 5 (38) | 18 (49) | 5 (23) | 7 (21) |
| 당사의 계약이행보증 미제출 | 1 (8) | 2 (5) | 0 (0) | 0 (0) |
| 지급보증서는 발급, 실제 교부안됨 | 11 (8) | 2 (5) | 2 (9) | 4 (12) |
| 원사업자와 합의 | 8 (8) | 2 (5) | 2 (9) | 4 (12) |
|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 | 4 (31) | 8 (22) | 9 (41) | 9 (27) |
| 기 타 | 7 (54) | 5 (14) | 9 (41) | 9 (27) |

-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응답업체의 23%가 계약변경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여전히 추가로 교부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77%라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31〉.

**〈표-31〉 지급보증서 교부 뒤,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 다 | 1 (4) | 0 (0) | 2 (5) | 4 (16) | 7 (23) |
| 없 다 | 27 (96) | 17 (100) | 40 (95) | 21 (84) | 23 (77) |

-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응답업체의 18%가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표-32〉. 이는 〈표-31〉의 결과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와 비교해 살펴볼 수 있음.

**〈표-32〉 어음(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초과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 다 | 1 (4) | 0 (0) | 1 (3) | 0 (0) | 5 (18) |
| 없 다 | 27 (96) | 18 (100) | 38 (97) | 22 (100) | 23 (82)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1분기와 동일하게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49%)’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20%)’와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0%)’이 동일비율로 나타남 〈표-33〉.

〈표-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법 (건, %)

|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 8 (32) | 5 (11) | 6 (18) | 7 (20) |
|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9 (36) | 24 (55) | 7 (21) | 7 (20) |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 | 7 (28) | 14 (32) | 15 (45) | 17 (49) |
| 기 타 | 1 (4) | 1 (2) | 5 (15) | 4 (11) |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응답업체의 88%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 <표-34>.

<표-34>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시점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하도급계약 체결시 | 46 (100) | 34 (97) | 50 (96) | 35 (88) | 35 (88) |
| 없 다 | 0 (0) | 1 (3) | 2 (4) | 5 (12) | 5 (12) |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받았다는 응답은 24%인 것으로 집계됨 <표-35>.

<표-35>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 다 | 11 (21) | 7 (17) | 7 (13) | 13 (29) | 10 (24) |
| 없 다 | 41 (79) | 34 (83) | 48 (87) | 32 (71) | 31 (76) |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29%)',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17%)'하다는 응답이었음 <표-36>.

<표-36>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 (건, %)

|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 | 7 (32) | 7 (23) | 13 (37) | 10 (29) |
|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 | 2 (9) | 10 (32) | 4 (11) | 6 (17) |
|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 5 (23) | 9 (29) | 11 (31) | 12 (34) |
| 기 타 | 8 (36) | 5 (16) | 7 (20) | 7 (20) |

9) 동 문항은 원사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지정한 경우를 의미함

-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8%로 집계됨 <표-37>.

<표-37> 하도급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 등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건, %)

| | '16. 2분기 | '16. 3분기 | '16. 4분기 | '17. 1분기 | '17. 2분기 |
|-----|----------|----------|----------|----------|----------------|
| 있 다 | 3 (7) | 3 (8) | 0 (0) | 2 (5) | 3 (8) |
| 없 다 | 41 (93) | 33 (92) | 51 (100) | 39 (95) | 35 (92) |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는 <표-38>에 정리됨.

<표-38>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2분기 집계)

| 불공정거래의 발생단계 | 불공정거래 사례 |
|----------------|---|
| 발주자/원도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등의 금액을 감액 - 계약내역서에 없는 소액공사를 추가함으로써 실공사금액이 커지도록 강요 - 현장감독 및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낙차를 변경하는 사례 |
|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다수 업체 지적) - 특정자재의 사용강요하고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에 미반영 |
| 시공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지시 후 변경계약에 미반영함으로써 분쟁을 야기 - 설계변경을 구두지시 후 공사비에 미반영 - 선시공후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지연 - 경미한 사안임을 이유로 증액거부 |
|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성금 수령 지연 - 설계변경지연 및 대금지급 지연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
| 유지관리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에 따른 무리한 하자보수를 요구 - 타 공종과 연계된 공사임에도 우선 하자보수를 신청한 뒤 해당 전문건설업 체의 대응정도를 감안해 요구를 적용 - 현장관리의 부실로 인한 사안을 전문공사의 하자로 간주 |

